

2026년도 민관 공동 전략형 상생협력사업 (창의트랙사업) 추가모집 공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이하 ‘상생협력재단’)은 대·중소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기획한 창의적 상생협력 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민관 공동 전략형 상생협력사업 (창의트랙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7월 30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 「민관 공동 전략형 상생협력사업」의 창의트랙 분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대·중소기업 등이 상호 성과를 창출하고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상생협력 활동을 지원하여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 사업 내용

- 출연기업과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기획한 창의적 상생협력 과제를 발굴·선정하여 지원

☐ 추진 체계

구 분	주요 역할
총괄기관 (중기부)	· 사업 기본계획 수립, 국고보조금 교부, 사업 및 전담기관 관리 등

구 분		주요 역할
전담기관 (상생협력재단)		▸ 사업공고, 선정평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조성·지원, 보조금 교부, 성과관리 등
태 일	주관기업	▸ 출연기업 또는 참여기업 중 과제 운영을 총괄 수행하는 기업 - 협약체결, 참여기업 관리, 집행 관리, 과제 정산, 사후관리 등
	출연기업 (대기업 등)	▸ 과제발굴 및 세부계획 수립, 참여기업 선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 과제운영 및 주관기업의 역할 수행(필요시) 등
	참여기업 (중소기업)	▸ 과제 공동참여, 사후관리 및 주관기업의 역할 수행(필요시) 등

2. 지원내용

☐ 지원 기간

- 협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26.9.1~26.10.31 예정)

☐ 지원 대상

- 출연기업과 공동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참여기업)

☐ 지원 내용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이하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과제* 중 창의적이면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상생협력과제 지원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0조의5에 따른 기금

** 「상생협력법」 제20조의5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4에 따라 상생협력기금 사용 가능 용도에 부합하는 과제 ([붙임 2] 참조)

< 상생협력기금 지원 예시 >

지원분야	주요내용
해외진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시장 진출·지원 등 판로확대
창업기업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컨설팅, 교육 등 창업지원
생산성향상	시스템반도체미래차부품 산업 등 신기술, 제조공정 개선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기술보호	공급망 내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보호
복리증진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 협력사 복지지원 등 복리증진

- (지식확산) 대기업의 지식·기술·노하우(장비배치, 경영 기법 등) 등을 중소기업에 확산·적용하여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과제 지원
- * (예)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현장 진단 및 솔루션 제시 → 솔루션 집행 → 문제 해결
- (환경 변화 대응) 신산업·신시장 진출, 신규 일자리 창출, 산업안전 및 ESG 대응 등 경영 환경 변화에 창의적 해결 과제 지원
- (기타) 대·중소기업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창의적 상생협력 과제

< 지원 유형별 예시 >

지식 확산	주요내용	
	대기업의 지식·기술·노하우(장비배치, 경영기법 등)을 중소기업에 전수	
	대기업의 경영기법, 관리시스템, 운영 프로세스 등을 중소기업에 이전 및 확산	
	대기업의 생산기술, 공정기술, 특허, 설비 운영기술 등을 중소기업에 이전 및 고도화	
	대기업 연구소 등에서 조사한 관련 논문·학회지 등의 지식을 중소기업 연구개발에 적용	
	협력사를 대상으로 포럼·교육 운영을 통한 산업 동향, 혁신기법 공유로 현장 적용	
환경 변화 대응	업 종	주요내용
	자 동 차	내연기관 자동차 → 자율주행·전기차·탄소중립 등 미래차 연구개발
	철강·화학	기존 제조공정 → 그린에너지 활용 제조공정 전환
	건 설	노동집약적 건설공정 → 가상현실, 로봇 등 활용한 생산성 향상 공정
	유통	오프라인 중심 → 구독서비스, 플랫폼 중심 온라인 유통 전환
	식품	기존 분야 생산 → 건강기능식품, 맞춤형 식품 솔루션 등 생산
	전 자	일반 가전 → AI, 헬스케어, 스마트 가전제품 개발

* 위 표는 사업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참고 예시

□ 지원 조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①출연기업과 ②참여기업(중소기업)이 과제에 공동으로 참여 필수

- (①출연기업) 「상생협력법」 제20조의5에 따른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는 내국법인 (대기업,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

* 상생협력기금 종합관리시스템(winfis.win-win.or.kr)을 통한 출연신청, 과제신청, 기금 집행, 환수 등 기금 집행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필요

- (②참여기업) 국고보조금 및 상생협력기금을 지원받는 중소기업*으로 출연기업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중소기업*

* 중소기업 여부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행한 중소기업확인서

** 특수관계인 여부 확인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명기된 특수관계자 내역확인 등

- (주관기업) ①출연기업 또는 ②참여기업 중 창의트랙 사업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

*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국고보조금 및 상생협력기금 관련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

** 필요 시 과제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과제의 관리, 운영 등을 전담 수행 가능

□ 지원 규모

- 과제당 최대 50백만원 지원(국고보조금 50%, 상생협력기금 50%)

* 국고보조금 50백만원 지원 시, 상생협력기금 50백만원 출연 필요

- 1개 과제 내외 지원

*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조정 가능

3. 추진 절차



* 상기 추진절차는 변동될 수 있으며, 필요시 진도점검(현장방문)을 실시 가능

4. 과제 평가·선정 및 협약 체결

□ 신청 주체

- 주관기업 (출연기업 또는 참여기업 중 주관기업을 정함)

□ 과제 평가 및 선정 * 세부 일정은 신청 주관기업에 별도 안내

- (요건검토) 신청 자격, 제출 서류 등 검토
- (선정평가) 운영위원회에서 지원과제 심사·선정
 - － (평가방법)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과제 평가
 - * 선정 평가는 대면 평가가 원칙이며, 사업계획에 대한 발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과제책임자가 발표하고, 출연기업은 동반 참여
- (심사요소) 과제의 타당성 (50점) 및 사업성 (50점)을 종합적으로 심사
 - － (타당성) ① 상호-원원·환경변화 대응·상생분야 확대 등 사업추진 필요성 및 중요성, ② 사업목표의 적절성, ③ 참여 주체의 역할·노력, ④ 사업난이도 및 추진 적절성 등
 - － (사업성) ① 중소기업 협업역량(지재권, 인증 등), ② 既 거래관계 개선 신규협업, ③ 예상 성과(매출액, 판로 등), ④ 성장·지속 가능성 (ESG) 등
 - － (우대사항) ① 성과공유제 內 중소기업 제안 과제* (1점), ② 원원 아너스 선정 과제 (3점) 등 인정받은 우수사례 선정 기업 가점 (최대 3점)
 - * 성과공유 과제 중 구매기업의 수요 기술에 대해 중소기업이 해결 방안을 제안한 과제로 상생협력법 제8조에 따른 성과공유제 등록과제 확인증 제출

※ 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별 정부 지원금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과제 협약 체결 * 자세한 사항은 과제 선정 이후 추가 안내 예정

- 전담기관(상생협력재단), 주관기업 간 협약체결

협약 시 필요사항

- 최종 수정 사업계획서 (12p 이내) 및 증빙서류
- 창의트랙사업 협약서
- 사업비 통장 총 2개(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된 국고보조금·상생협력기금)

5. 신청 기간 및 접수 방법

□ 신청 기간 : 2026년 7월 30일(목) ~ 8월 18일(화) 18시, 19일간

□ 신청 방법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

* 제출서류 : e나라도움 또는 협력재단 (www.win-win.or.kr) 사업공고 첨부파일 확인

참 고	e나라도움 사업 신청방법
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에 회원가입	
② 홈페이지 상단의 [공모사업 찾기]에서 '26년도 민관 공동 전략형 상생협력사업 (창의트랙사업)' 검색	
③ 로그인 후 [공모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사업신청서 작성화면]으로 이동	
④ [신청기관등록/사업내용등록] 내용 입력, 신청서(한글파일 및 PDF파일 각 1부) 등 제출서류 업로드 후 [신청서 제출] 클릭	
※ 제출서류 목록	
1. 창의트랙사업 신청서 및 별첨 서류	
2. 기타 사업신청 참고자료 등	

□ 유의 사항

○ 주관기업은 「민관 공동 전략형 상생협력사업 (창의트랙사업) 운영 지침」을 반드시 숙지하고 신청서 등 서류 작성 및 제출

*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전담기관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창의트랙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과제별 사업비 정산을 위해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제출 필요(사업비 내 회계정산 비용 반영 필요)

○ 허위 사실 기재, 신청서 작성 오류, 제출서류 미비 및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주관기업 책임으로 함

○ 과제 수행 시 부실·허위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재 및 국고보조금 및 상생협력기금 환수, 사업참여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문의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협력지원부

(☎ 02-368-8971, 8746 / ✉ winwinct@win-win.or.kr)

붙임 1
사업비 구성 기준
[별표 1] 창의트랙사업 사업비 구성기준

목	세목	세부내역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 범용성 물품 구입 불가
		○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배너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사업 관련 상패 등의 제작비
		○ 소모품비 - 토너 등 행정사무용 각종 소모성 물품에 대한 구입비 - 자산성 물품은 원칙적으로 구입이 불가하나 필요시 전담기관과 협의 하여 사업비 반영 검토
		○ 공고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수수료 및 사용료 - 회계수수료,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등
		○ 전문가활용비 - 현장조사, 통역 등 전문가 활용에 수반하는 비용 - 법률, 노무 등 자문료 - 원고료 등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사업추진 관련 회의 등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및 안전 검토비 - 외부강사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02)	○ 공공요금 - 사업추진 관련 우편요금 등
	임차료 (07)	○ 임차료 -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회의장 및 행사장 임차) 등
	재료비 (11)	○ 재료비 -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 -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 사료구입비
	일반 용역비 (14)	○ 일반용역비 - 사업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컨설팅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여비 (220)	국내여비 (01)	○ 국내여비 -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국외여비 (02)	○ 국외여비 - 국외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업무 추진비 (240)	사업 추진비 (01)	○ 사업추진비 -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식음료비
연구 개발비 (260)	연구 개발비 (01)	○ 연구개발비 - 전산개발,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제품개발 등 지식기반의 개발 업무에 대한 용역 비용

< 상생협력법 >

제20조의5(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 대·중소기업 간의 지속가능한 발전, 상생협력 촉진 및 동반성장을 통한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단에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협력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재단은 상생협력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 상생협력기금은 내국법인 출연금 등으로 조성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그 용도와 사업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그 지정된 용도와 사업에 출연금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상생협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에 관한 사업
2.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촉진 사업
3. 대·중소기업 간 인력교류 확대 사업
4. 대·중소기업 간 환경경영협력 촉진 사업
5.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6. 상생협력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그 밖에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상생협력법 시행령 >

제13조의4(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용도) 법 제20조의5제5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2.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지원 사업
3.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사업
4. 대·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한 공동 협력 사업
5. 대·중소기업 간 거래 공정화 지원 사업
6.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기반 구축 및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8.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

- 제3자(불법 브로커)가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 개입해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불법 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당개입 주요유형	
①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지원사업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② 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③ 허위 약속	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 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주겠다고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④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지원사업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⑤ 부정청탁	정부, 공공기관 직원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⑥ 계약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선정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